

부산지방법원 2022. 9. 14 선고 2022나418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9. 14 선고 2022나41874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2. 23 선고 2020가단10187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2. 8. 17.

판결선고 2022. 9. 14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. 12. 23. 선고 2020가단101872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“별지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”를 “별지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”로 경정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2015. 3. 19. 한 소유권경정의 상속협의분할 계약은 22,501,1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2,501,1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0면 제6행 “아무런 증거가 없다.”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또한 피고는, 이 사건 3, 4 부동산을 2016. 11. 8. 합계 37,000,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, 가액배상을 위한 시가 산정은 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,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(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28819,28826 판결 등 참조)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,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“별지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”는 “별지1.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일예, 판사 서호원, 판사 이은명

별지